모바일 접근성 점검 메뉴얼

[심사가이드 Ver.1.5 참조]

Rule No.1_1

텍스트 아닌 모든 요소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텍스트가 아닌 모든 객체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텍스트가 아닌 객체에는 label속성(IOS) 또는contentsDescription속성(Android) 등으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만 해당 정보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이전/다음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모든 의미있는 요소에 유의미한 음성정보를 출력하는지 확인합니다.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빈 "버튼" 또는 파일명 등으로 정보를 출력)

(기본 화면읽기 기능 -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2

의미와 용도를 이해할 수 있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모든 텍스트가 아닌 객체에는 해당 객체의 의미 및 용도에 맞게 간단명료하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모든 텍스트가 아닌 객체에는 label속성(IOS) 또는 contentsDescription속성 (Android) 등으로 해당 객체의 의미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여야만 해당 정보를 이해 할 수 있습니다.

1) 텍스트 이미지

텍스트 이미지란 글자나 단어, 문장 등 간단하고 짧은 글자들의 집합을 이용하여 이미지로 디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서는 원래 제공하고자 했던 텍스트 이미지 내용을 그대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십시오(일부가 아닌 전체 내용).

2) 그림과 사진

일반적인 인물, 풍경, 회사로고, 상품 및 제품 사진 등에는 해당 인물의 이름, 풍경의 제목 및 간단한 묘사, 회사 이름, 제품의 이름 등을 그대로 대체 텍스 트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링크가 걸린 이미지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있을 때에는 그 링크의 성격에 맞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하며, 이미지의 모양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가 제공하는 의미적인(semantic)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일한 페이지로 이동되는 텍스트 링크가 주변에 같이 제공된다면 하나의 링크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링크를 두 개로 나누는 경우에는 텍스트 링크와 동일한 내용을 대체텍스트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데이터 차트

데이터 차트와 같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야할 경우 보조기술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십시오.

5) 의미가 없는 이미지

글머리기호, 테두리,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의 경우에는 대체텍스트를 공란으로 제공하고,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 해당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accessibility 속성 및 focusable속성을 비활성화 시키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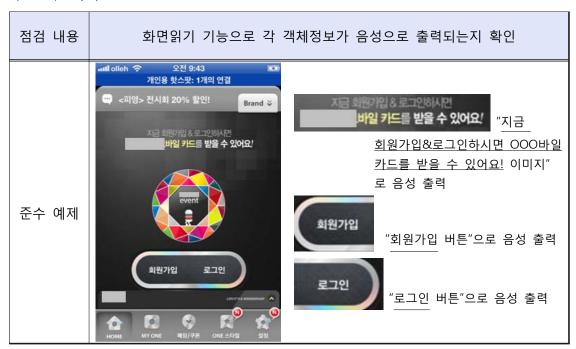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에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 로 모든 의미 있는 요소에 의미에 맞는 음성정보를 출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3

의미가 없는 요소에는 불필요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의미가 없는 단순한 장식 등의 요소에는 대체텍스트를 공란으로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글머리 기호, 테두리, 선, 장식용 이미지, 공백 이미지 등 의미나 기능이 없는 단순한 장식 요소에는 화면낭독 기능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무시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공란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Accessibility속성을 비활성화 시키거나(IOS), focusable속성을 비활성화 (Android)하는 등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음성읽기로 운용 시 초점이 가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의미없는 요소에 대체텍스 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의미없는 요소에 음성정보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4

hint로만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hint로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hint정보는 기본으로 읽어주는 속성이 아닌, 사용자의 선택에 의한 옵션으로 hint로 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iOS).

텍스트가 아닌 모든 의미 있는 객체에는 label속성(IOS) 또는contentsDescription 속성(Android) 등 기본 대체텍스트 속성으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만 hint속성을 이용하여 추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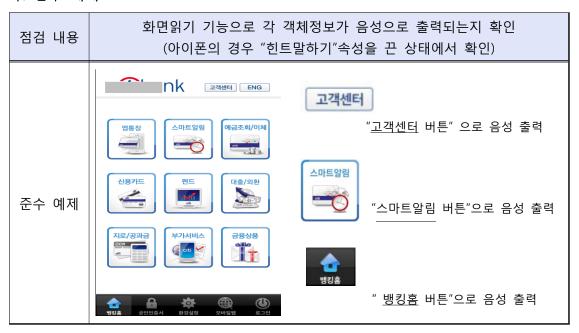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힌트말하기"는 끈 상태에서 다음/이전 항목 읽기 (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의미에 맞는 음성정보를 출력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힌트말하기"를 켠 상태에서만 의미에 맞는 음성정보가 출력되면 해당 규칙 위반입 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5

객체 유형정보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객체 유형정보가 반복 제공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화면 읽기 기능은 각 객체의 유형정보(버튼, 이미지 등)를 기본으로 함께 읽어주기 때문에 "~버튼", "~이미지" 등의 불필요한 요소를 대체텍스트에 제공하면 "~버튼 버튼", "~이미지이미지"로 정보가 출력되기 객체정보를 대체텍스트에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반복된 객체 유형정보가 출력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6

객체 유형정보가 잘못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객체 유형정보는 바르게 제공되어야 함

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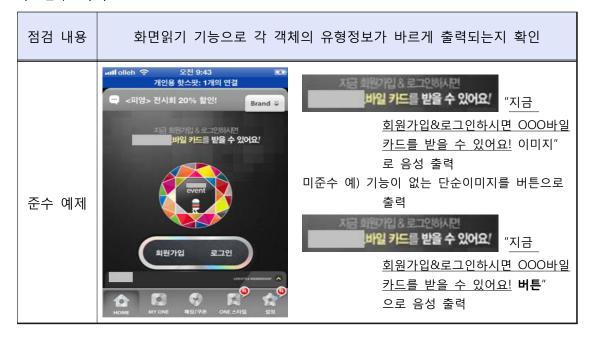
화면 읽기 기능은 각 객체의 유형정보(버튼, 이미지 등)를 기본으로 함께 읽어주기 때문에 해당 유형정보는 올바르게 제공되어져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객체 유형정보가 잘못 출력되는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7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으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대체텍스트는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으로 제공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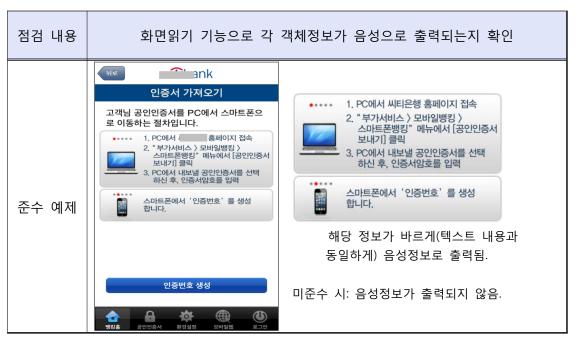
대체텍스트를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으로 제공 시에는 모바일 기기의 기본 화면읽기 기능으로 인지가 되지 않아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는 시각장애인은 해당 정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웹뷰페이지 등에서 화면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대체 텍스트가 인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1_8

IR기법으로 대체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대체텍스트는 화면에 보여지는 정보에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대체텍스트를 IR기법(Image Replacement: 이미지대체기법)으로 제공하며 화면을 터치해 가며 화면을 읽는 방식으로는 대체텍스트가 인지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은 해 당 정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display:none, visibility:hidden으로 구현 시에는 화면읽기 기능으로 정보가 인지되지 않고, 화면밖으로 대체정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도 드래그 방식(한 손가락을 화면에서 떼지 않고 이동)으로는 인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웹뷰페이지 등에서 화면에보이지 않는 형태로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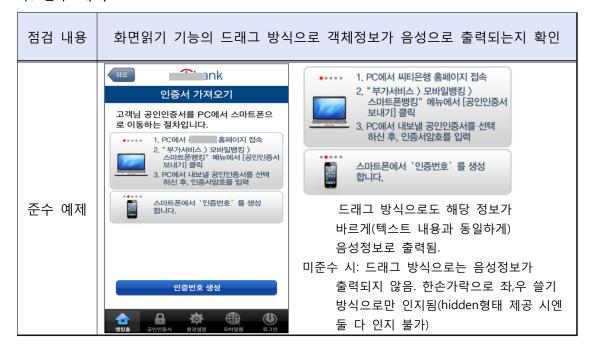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대체텍스트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한 손가락으로 화면의 제공되는 유의미한 모든 요소를 쓸며 대체텍스트가 인지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6조(대체 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1.대체텍스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1.대체텍스트

Rule No.2_1

의미를 지닌 모든 객체에는 초점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요약

의미 있는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음.

나. 설명

의미가 있는 객체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으면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음성읽기 기능(iOS VoiceOver, 안드로이드 Talkback 등)을 활용하는 사용자가 해당 정보를 얻거나,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닌 의미있는 모든 객체에는 Accessibility 속성 (iOS) 및 focusable (Android) 속성 등을 활성화 시켜 초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초점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모든 의미있는 객체에 초점이 제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7조(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2.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2.초점

Rule No.2_2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가. 요약

초점은 논리적인 순서로 이동되어야 함.

나, 설명

초점의 이동 순서는 사용자가 정보를 순차적으로 이해, 이용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동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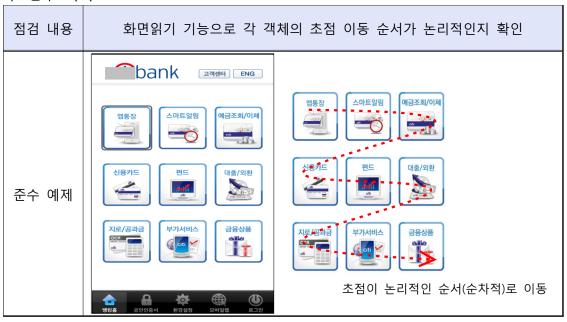
만약, 제목1, 제목2, 내용1, 내용2의 순서로 초점이 이동되거나, 로그인서식에서 아이디, 로그인 확인버튼, 비밀번호 입력서식의 순서로 이동된다면 화면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해당 정보를 이해하거나,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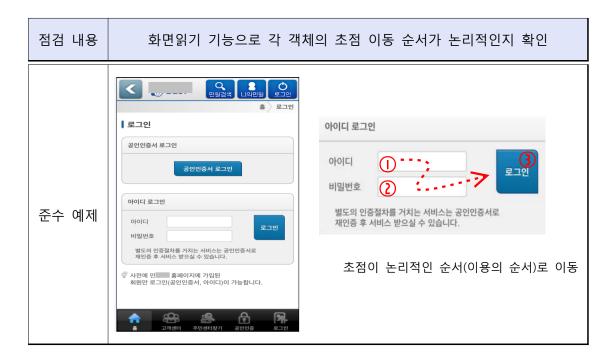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초점의 이동순서가 논리적 인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초점의 이동이 논리적인 순서(이용의 순서,이해의 순서) 로 제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7조(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2.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2.초점

Rule No.2_3

초점 영역은 겹쳐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초점영역은 서로 겹치지 않게 제공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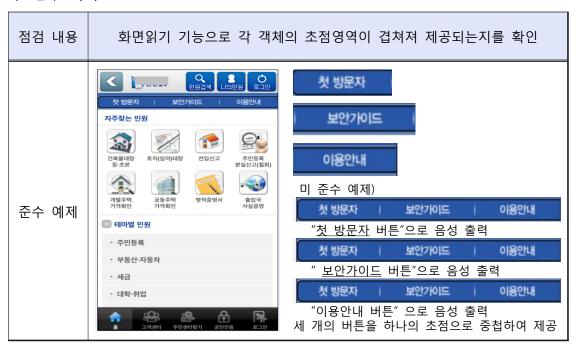
나. 설명

초점이 영역이 겹치면 화면읽기 기능 이용자가 터치방식으로 이용 시 겹쳐진 부분의 정보확인 및 기능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초점의 영역은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초점이 겹치는 영역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초점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7조(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2.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2.초점

Rule No.2_4

초점은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초점은 중간에 사라지지 않아야 함.

나. 설명

초점이 중간에 사라지거나,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초점이 이동되는 등 초점이 사라진 영역에 정보 제공 유무와 관계없이 초점은 사라지지 않도록 제공하여야 합 니다.

특히,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정보를 제공하면 드래그 방식이용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초점이 사라지는 영역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초점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7조(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2.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2.초점

Rule No.2_5

의미가 없는 부분에 초점이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의미가 없는 객체에 초점이 제공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음성정보 제공유무와 관계없이 내용이 없거나, 의미가 없는 부분에 초점이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음성정보는 화면에 보여지는 객체에 적용된 초점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초점이 무의미한 영역에 제공되는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초점이 내용이 없는 빈 공간이나, 의미가 없는 부분에 제공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7조(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2.초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2.초점

Rule No.3

입력서식에는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입력서식에는 적절한 설명 정보를 제공해야 함.

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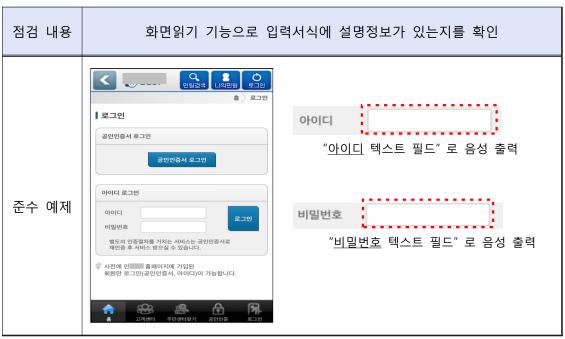
입력 서식은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접근성 속성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사용자가 사전에 어떤 정보를 입력하거나, 선택하는지를 인지하여 서식 작성이 용이하도록 모든 입력서식에는 label속성(IOS), contentsDescription속성(Android)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설명(레이블)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입력서식에 레이블이 있는 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입력서식에 서식에 맞는 설명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8조(운영체제 접근성 기능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3.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3.운영체제 접근성 기능지원

Rule No.4_1

두 손가락을 활용해야 하는 컨트롤은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두 손가락을 활용해야 하는 기능은 한 손가락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체기능을 제공해야 함.

나. 설명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이용해야 하는 확대, 축소, 다중 누르기(Multi-touch) 기능 등은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누르기 동작이란? : 한 손가락으로 동작이 가능한 터치, 탭 등의 동작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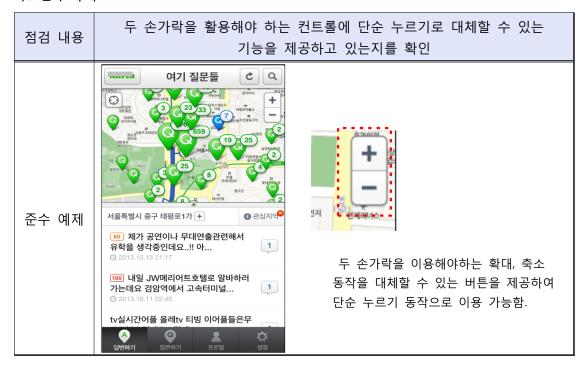
터치란(touch)? : 사물에 손 등이 닿는 행위

탭(tap)이란?: 손가락 등으로 가볍게 치는 동작

다. 검사방법

확대, 축소, 다중 누르기(Multi-touch) 등 두 손가락을 이용해야 하는 기능이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 활성화 시,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준수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9조(누르기 동작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4.누르기 동작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4.누르기 동작 지원

Rule No.4_2

슬라이드, 끌기와 놓기 등 복잡한 동작의 컨트롤은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슬라이드, 끌기와 놓기와 같은 복잡한 동작의 컨트롤은 단순 누르기 동작으로도 이 용할 수 있도록 대체기능을 제공해야 함.

나. 설명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의 복잡한 누르기 동작은 다양한 사용자가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순한 누르기 동작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 단순한 누르기 동작이란? : 한 손가락으로 동작이 가능한 터치, 탭 등의 동작을 말함.

터치란(touch)? : 사물에 손 등이 닿는 행위

탭(tap)이란?: 손가락 등으로 가볍게 치는 동작

다. 검사방법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 복잡한 누르기 동작이 필요한 기능이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 활성화 시, 단순 누르기 동작(이중탭 등)으로 대체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복잡한 동작 예) 두 손가락을 활용해야 하는 확대, 축소 기능, 볼륨슬라이드 조절 등과 같이 슬라이드(Slide), 끌기와 놓기(Drag and drop) 등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9조(누르기 동작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4.누르기 동작 지원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4.누르기 동작 지원

Rule No.5

정보를 색상으로만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색상으로만 정보를 구분하지 않아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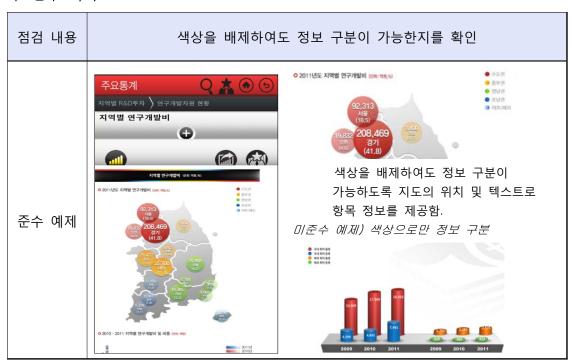
나. 설명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프의 각 항목 등의 정보를 색상으로만 표시하게 되면, 특정 색을 구분할 수 없 는 색맹이나 색약자의 경우 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다. 검사방법

색상을 제거한 상태에서도 제공되는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0조(색에 무관한 인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5.색에 무관한 인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5.색에 무관한 인식

Rule No.6

정보와 배경간의 명도는 정보가 구분될 수 있도록 3:1 이상이여야 한다.

가. 요약

정보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최소 3: 1 이상이여야 함.

나. 설명

화면상의 모든 정보는 최소 명도대비가 3:1 이상이여야 합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유사하거나, 명도대비가 낮으면 정보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진, 동영상, 로고 등을 제외한 모든 정보는 최소 3:1 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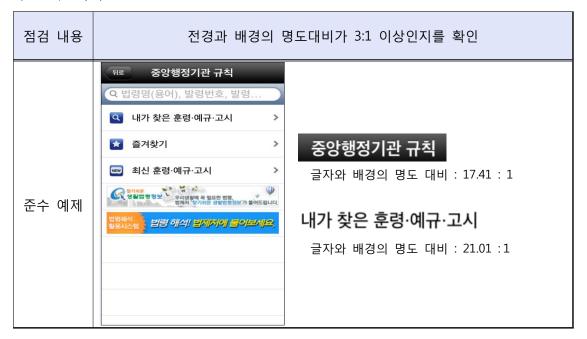
다. 검사방법

텍스트 콘텐츠에 대해 전경과 배경의 명도대비를 명도대비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검사함.

명도대비 측정 도구: Colour Contrast Analyser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1조(명도 대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6.명도 대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2장. 6.명도 대비

Rule No.7_1

멀티미디어 콘텐츠 음성정보에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음성정보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청각장애인 및 음성정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음성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멀티미디어에서 제공하는 음성 정보와 동등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음성정보 대체수단이 제공되었는지를 검사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2조(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7.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7.자막, 수화 등 의 제공

Rule No.7_2

음성정보 대체수단은 일부가 아닌 전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음성정보 대체수단은 요약이나 일부가 아닌 전체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동영상이나 음성으로 제공되는 콘텐츠에는 청각장애인 및 음성정보를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도 음성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자막이나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음성정보 대체수단은 일부나 음성의 요약정보가 아닌, 제공되는 정보와 동등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에서 제공하는 음성정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자막이나 원고, 또는 수화로 제공하였는지를 검사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2조(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7.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7.자막, 수화 등의 제공

Rule No.7_3

화면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화면정보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다.

가. 요약

화면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는 화면정보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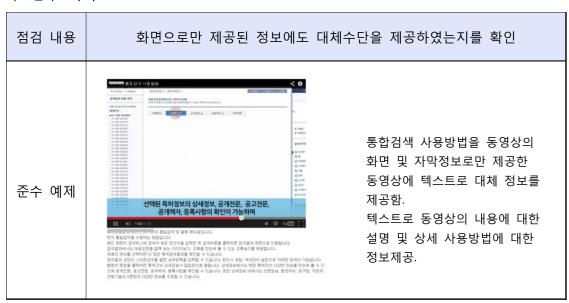
나. 설명

화면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은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없습니다. 유의미한 음성정보 없는 스케치 영상이나 화면에 자막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에는 시각장애인도 해당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정보를 텍스트로 제공하거나 나래이션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화면으로만 정보를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콘텐츠에 화면 대체 정보를 텍스트나 나래 이션 등으로 제공하였는지를 검사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2조(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I_7.자막, 수화 등의 제공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제2장. 7.자막, 수화 등의 제공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하여도 동작이 멈추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하여도 동작에 문제가 없어야 함.

나, 설명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했을 때에도 동작이 멈추지 않고 기능이 동작하여야 합니다.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Native UI Component)가 아닌, 사용자 변형 UI 컴포넌트(Custom UI Component)를 사용하는 경우 기본 화면읽기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했을 때 특정 콘트롤에서 동작이 멈추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3조(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Ⅲ_2.Native UI Component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4장. 1.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 (Native UI Component)

컨트롤의 중심 간격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컨트롤의 중심간격은 사용자의 의도대로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제공해 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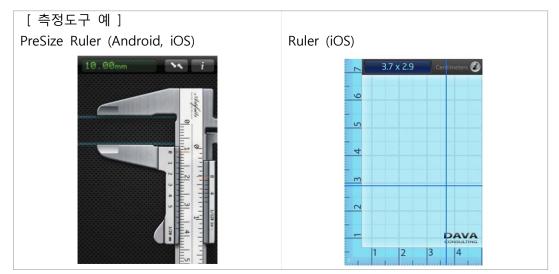
나. 설명

모바일 기기는 터치를 통하여 컨트롤하기 때문에 터치의 정확성을 위하여 컨트롤간의 중심간 간격이 13mm이상으로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컨트롤 중심간 간격을 측정합니다.

간격 측정 도구: 앱스토어에서 무료 측정도구를 활용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4조(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1.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1.컨트롤간 충분한 간격

Rule No.10_1

알림창(메시지 박스)의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알림 정보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함.

나. 설명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도 알림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시각 및 청각 등 한 가지 감각으로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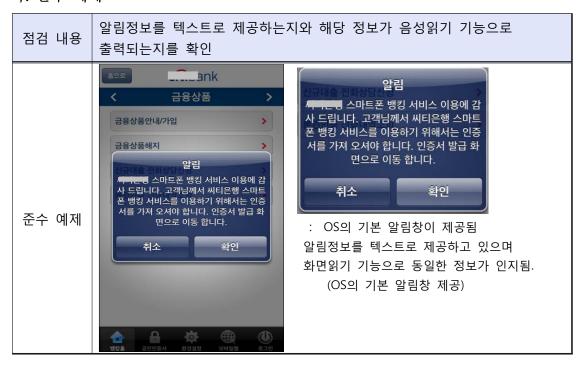
알림정보는 텍스트로 제공하고, 텍스트이미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체텍스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음성으로만 제공되는 알림정보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텍스트로 제공된 알림정보는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정보(알림창의 title, message, 알림창 버튼의 title)가 동일하게 인지되는지를 판단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5조(알림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2.알림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2.알림 기능

Rule No.10_2

알림창 팝업 시 알림소리와 진동이 제공되거나, 앱내 설정 창에 알림정보 에 대해 진동/소리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알림창 팝업 시에 알림소리와 진동이 제공되거나, 해당 앱 내의 설정 창에 알림정 보에 대해 소리/진동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나. 설명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 등도 알림정보가 제공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림창 팝업 시 소리와 진동을 함께 제공하거나, 각각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앱 내 설정 창에 알림정보를 진동/소리 선택 기능을 제공하여 원하는 방식(감각)으로 정보를 제 공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단, 알림창이 특정 컨트롤 선택에 의해 바로 시각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청각장 애인은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진동은 제공되지 않아도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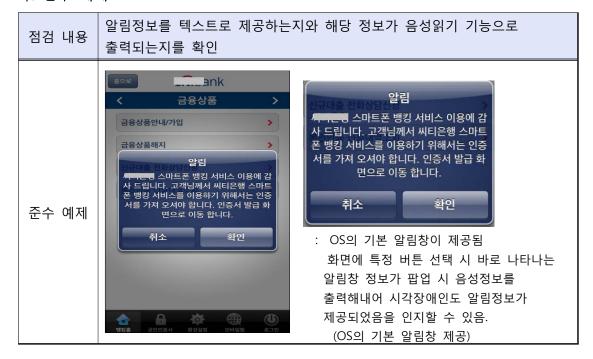
또한, OS에서 제공하는 기본 알림창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접근성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객체에 음성출력이 가능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했을 때 알림창 팝업 시 음성정보를출력하는지를 확인하고, 알림기능 설정이 필요한 경우 앱내 설정 창에 알림정보 진동/소리 선택기능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5조(알림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2.알림 기능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2.알림 기능

Rule No.11_1

범용폰트를 사용하여 폰트 크기 확대가 가능하거나, 운영체제의 폰트변경 및 크기 설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요약

폰트 크기 확대 및 폰트변경 및 크기설정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설명

저시력인, 고령자 등은 일반 PC보다 화면이 적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작은 화면으로 인해 정보를 인식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도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폰트를 바꾸거나 폰트의크기 등을 조절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어야합니다.

다. 검사방법

폰트 크기 확대기능이 제공되거나, OS의 기본 설정에서 폰트 변경이나 크기변경 시적용되는 지를 판단합니다.

OS 자체에서 해당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6조 (범용 폰트 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Ⅲ_1. (폰트의 크기 조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4장. 2. 범용 폰트 이용

Rule No.11_2

텍스트 이미지는 2배 확대하여도 가독이 용이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가. 요약

텍스트 이미지를 2배 확대하여도 가독이 용이하여야 함.

나. 설명

저시력인, 고령자 등은 일반 PC보다 화면이 적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함에 있어 작은 화면으로 인해 정보를 인식하는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도 동등하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텍스트 이미지를 2배 이상확대하여도 가독이 용이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텍스트 이미지를 2배 확대하였을 경우 가독이 어려운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6조 (범용 폰트 이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Ⅲ_1. (폰트의 크기 조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4장. 2. 범용 폰트 이용

Rule No.12_1

화면마다 반복되는 메뉴 및 내비게이션 버튼 등은 동일위치에 배치되어야 한다.

가. 요약

화면마다 반복되는 메뉴 및 내비게이션 버튼 등은 동일한 위치에 배치되어야 함.

나. 설명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 화면을 확대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창의 일부 영역을 화면에 확대하여 이용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창마다 내비게 이션 컨트롤의 위치와 모양이 다르면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반복되는 컨트롤의 배치는 일관성있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맹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화면 내 반복되는 컨트롤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다. 검사방법

하단 탭바, 메뉴, 이전 버튼 등 화면마다 반복되는 컨트롤이 동일한 위치에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7조(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Π_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Rule No.12_2

알림창에 제공된 버튼의 배치순서는 일관성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가. 요약

알림창에 제공된 버튼의 배치순서는 일관성 있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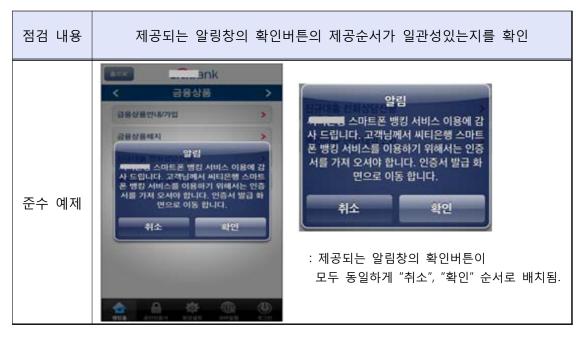
나. 설명

저시력인이나 고령자 등 화면을 확대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전체 화면이 아니라 창의 일부 영역을 화면에 확대하여 이용하고, 화면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시각 장애인의 경우에도 화면 내 제공 위치 및 형태, 순서 등을 기억하여 사용하기 때문 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을 일관성있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알림창의 경우 메시지 하단의 확인, 취소 등 버튼의 배치순서를 모두 동일형태로 일관성있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제공되는 알림창의 확인, 취소 등의 버튼이 모두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 지를 판단합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7조(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Π_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Rule No.12_3

콘텐츠 영역의 배치순서는 화면마다 일관성 있는 순서로 제공되어야 한다.

가. 요약

콘텐츠 영역의 배치순서는 화면마다 일관성 있게 제공되어야 함

나.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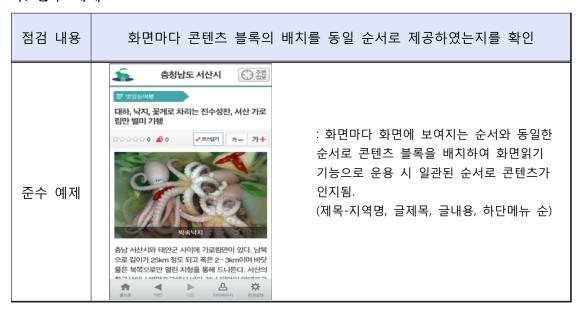
화면읽기 기능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학습된 방식으로 제공 정보를 예측할 수 있도록 화면마다 콘텐츠 영역의 배치순서는 동일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단메뉴, 본문, 하단메뉴의 형태로 제공된 화면이 있다면 화면마다 시각적으로 동일한 위치에 제공뿐 아니라, 콘텐츠 배치순서도 모든 화면에서 동일한 순서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모바일 기기가 제공하는 기본 화면읽기 기능을 활용하여 콘텐츠 영역(블록) 간 초점의 이동순서가 일관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화면읽기 기능을 활성화 한 후, 다음/이전 항목 읽기(한손가락 좌,우로 쓸기) 및 전체읽기(IOS: 두손가락 아래로 쓸기)로 콘텐츠 영역(블록)간 초점의 이동순서가 화면마다 동일한지를 확인합니다.

(IOS:VoiceOver, Android :TalkBack)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 제17조(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3.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3.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일 관성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사전 경고 없이 초당 3~50회 깜빡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특정 사용자에게 광과민성 발작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경고 없이 깜빡이는 콘텐츠는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초당 3회~ 50회 깜빡이는 콘텐츠가 사전 경고 없이 제공되는 지를 판단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8조(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4.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4.깜박거림의 사용 제한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가. 요약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함

나. 설명

시각장애인의 경우 모바일 기기에서 제공하는 화면읽기 기능(iOS VoiceOver, 안드로이드 Talkback 등)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화면읽기 기능의 음성정보를 정확히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 검사방법

3초 이상 자동으로 재생되는 배경음을 사용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용자가 손쉽게 멈출 수 있는 컨트롤을 제공하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라. 준수 예제



마. 관련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제19조(배경음 사용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iOS) 접근성 점검 매뉴얼(v1.0) Ⅱ_5.배경음 사용 금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매뉴얼(안드로이드) 제3장. 5. 배경음 사용 제한